

부속서 3-다

원산지 증명서

첨부 1

원본(제2사본/제3사본)

1. 송하인(수출자의 상호, 주소, 국가)		참조번호 한국-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(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) 서식 KV 발행국 _____ (국가) 뒷면 참조			
2. 수하인(수하인의 이름, 주소, 국가)					
3. 운송수단 및 경로(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)		4. 담당자란			
출항일		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-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관세대우			
선명/편명		<input type="checkbox"/> 특혜관세대우 비부여 (사유를 기재합니다)			
적출항	 수입국의 서명권자의 서명			
5. 품목번호	6. 포장의 표시 및 번호	7. 포장의 수량 및 종류, 상품명(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번호를 포함합니다)	8. 원산지 기준(뒷면의 주해를 참조합니다)	9.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(RVC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FOB를 기재합니다)	10. 송장 번호 및 일자

<p>11. 수출자 신고</p> <p>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,</p> <p>..... (국가)</p> <p>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-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.</p> <p>..... (수입국)</p> <p>..... 장소 및 일자, 서명권자의 서명</p>	<p>12. 증명</p> <p>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.</p> <p>..... 장소 및 일자, 서명 및 증명 기관의 관인</p>
<p>13. 비고</p>	

뒷면 주해

1.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(KVFTA)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.

대한민국
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

2. 조건: KV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, 상기에 명시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

- 1)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된다.
- 2) KVFTA의 제3.8조(직접운송)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한다.
- 3) KVFTA의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한다.

3. 원산지 기준: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,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8란에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이 서식 제11란에 이름이 기재된 수출 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	제8란에 기입
가.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	“WO”
나.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번변경 - 역내가치포함비율(RVC) - RVC + 세번변경 - 특정 공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CTC” -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“RVC”: 예, “RVC 45퍼센트” -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: 예, “CTH + RVC 40퍼센트” - “특정 공정”
다.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	“PE”
라. 제3.5조를 충족하는 상품	“제3.5조”

4.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: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다.
5. 상품명: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.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.
6. 본선인도가격(FOB):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FOB가격을 반영한다.
7.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: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.
8. 수출자: 제11란의 “수출자”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.
9. 담당자 기재란: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(√) 표시한다.
10. 제13란의 비교:
 - 1) 송장이 비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, “비당사국 송장”이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.
 - 2) 필요시 그 밖의 비교사항들이 기록된다.

원본(제2사본/제3사본)
(추가면)

참조번호

5. 품목 번호	6. 포장의 표시 및 번호	7. 포장의 수량 및 종류, 상품명(적절한 경우 수량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 번호를 포함합니다)	8. 원산지 기준 (뒷면 주해를 참조합니다)	9.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(RVC기준이 사용된 때에만 FOB를 기재합니다)	10. 송장 번호 및 일자
<p>11. 수출자 신고</p> <p>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,</p> <p>..... (국가)</p> <p>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-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.</p> <p>..... (수입국)</p> <p>..... 장소 및 일자, 서명권자의 서명</p>			<p>12. 증명</p> <p>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.</p> <p>..... 장소 및 일자,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</p>		
<p>13. 비고</p>					